집합투자기구 정정

□ 대상투자신탁 :

변경 전	현대 <u>중국으로뻗어나가는대한민국</u>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변경 후	현대 <u>튼튼대한민국</u>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대상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 변경내용 : 펀드명, 운용전략 변경,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변경대비표(간이투자설명서)

	<u>(간이누사실명서)</u>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집합투자기구	현대 <u>중국으로뻗어나가는대한민국</u>	현대 <u>튼튼대한민국</u>
	명칭 변경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투자결정시	기업공시서식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
유의사항	변경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운용전략 변경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으로 인한 문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수정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집합투자기구입니다.이 투자신탁은	종합주가지수 대비 적정 위험을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소비재	부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
		관련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자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에	합니다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운용전략 변경	(1) 기본 운용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위험관리		- 글로벌 경제권역 중 가장 고성장	지속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와
		이 예상되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일정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견조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향후 지속적인 매출증가가	투자함으로써 KOSPI 대비
		예상되는 국내 기업 주식에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u>.</u>
		집중투자함으로써 KOSPI 대비	
		<u>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u>	
		<u>(2) 세부 운용전략</u>	<u>(2) 세부 운용전략</u>
		■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트폴리오 운용전략
		1)시장의 성장성, 경쟁강도,	1)기본포트폴리오 : Top-down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 설비 능력	(하향식)과 Bottom-up(상향식)의
		<u>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u>	리서치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성장으로 장기적인	<u>최적의 포트폴리오구성</u>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심으로	2)자산배분 : 시장위험과 관련된
		<u>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u>	체계적 위험발생시 적극적
		2) 성장 프리미엄이 가능한 종목	자산배분전략(선물헷지전략 병행)
		<u>중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u>	3)섹터배분 : 경기상황과 업황을
		<u>종목에 우선 투자</u>	고려하여 탄력적인 섹터비중조절
		<u>3) 중국 소비시장의 패턴변화,</u>	<u>을 통해 초과수익 기회 포착</u>
		정책/제도의 변화에 맞춘 종목별	<u>4)종목선택 : 업종대표주와</u>
		영향을 고려하여 탄력적	전략종목군(시장주도주,

		포트폴리오 조절	<u> 저평가주)으로 초과수익 추구</u>
		■ 포트폴리오 선정기준 1)중국의 소비 대중화로 인한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 가전, 한셋, 자동차, 의류, 화장품 등 2) 중국내 소비 지역 확산에 맞춰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 유통, 홈쇼핑, 생활용품 등 3)중국 소비제품의 소재/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 : 철강, 화학, 타이어 등 4) 중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 항공, 면세점, 백화점, 카지노 등 자산 및 업종 배분 전략 : 1) 중국의 경기 상황을 감안한중국 관련 종목비중의 탄력적 비중조절을 통해 국면별 대응 2) 시장위험과 관련된 체계적위험 발생시 적극적 자산배분 전략 병행(선물 헷지 전략 병행) ○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으로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라 함은 중국 소비시장의 확대에 따른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라 함은 중국 소비시장의 확대에 따른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라 함은 중국 소비시장의 확대에 따른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 생활용품, 음식료, 게임, 유통, 운송 등)를 공급하는 국내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 Core(핵심) 종목군 -업종 대표 핵심 우량주로 중장기 투자용 - 투자비중은 70% 이상 - 펀드의 안정성을 목표로 구성 ◆ 전략 종목군 - 유망 우량주로서 시장 주도주 및 테마주에 중・단기 매매이익 확보를 위해 투자 - 투자비중은 30% 이하 -펀드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구성 2)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장기
5. 운용전문인력	작성기준일 변경 으로 인한 운용자 산 규모 업데이트		- 작성기준일 (2013.11.03)
6. 투자실적 추이			- 작성기준일 (2013.11.03)
Ⅱ. 매입•환매 괸			
1. 보수 및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u>발행분담금 등의</u>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직전 회계연도 : 2012.09.27 ~ 2013.09.26]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u>발행분담금(단,</u> 2013년 8월 28일까지 <u>발생분에 한함)</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Ⅲ. 요약 재무정보			작성기준일 : 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u>역장기군을 한적인외계단도</u>
확인서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간이투자설명서 확인서 추가

□ 변경대비표(투자설명서)

항목	(무시결성시)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집합투자기구	현대중국으로뻗어나가는대한민국	현대튼튼대한민국
	명칭 변경	현레 용크프로트에러기드레란턴크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현테} 트르테르트크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투자결정시	기업공시서식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
유의사항	건립8시시 변경	1. 구시년년시 중년년조시되 구시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성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	 		
5. 운용전문인력	작성기준일 변경		- 작성기준일
	으로 인한 운용 자산 규모 업데		<u>(2013.11.03)</u>
7. 집합투자기구	·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의 투자목적	으로 인한 문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수정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집합투자기구입니다.이 투자신탁은	<u>종합주가지수 대비 적정 위험을</u>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소비재 관련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u>부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u>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자
		<u>천천 국내 구석 등에 구착하여</u>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에	<u>네비 조파 구역을 결정하고자</u> 합니다
		조시네이 시인의 기시 이이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u> </u>
9. 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변경	(1) 기본 운용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의 투자전략,			지속성장이 가능한 장기성장주와
위험관리 및		이 예상되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수익구조		<u>일정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u>	<u>견조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업에</u>
가. 투자 전략		향후 지속적인 매출증가가	투자함으로써 KOSPI 대비
및 위험관리		예상되는 국내 기업 주식에	<u>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u>
		집중투자함으로써 KOSPI 대비	
		<u>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u> (2) 세부 운용전략	(2) 세부 운용전략
		<u>(८) 세포 요ㅎ요ㅋ</u> ■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u>(८) 세구 요ㅎ요ㅋ</u> ■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u> </u>
			(하향식)과 Bottom-up(상향식)의
			리서치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성장으로 장기적인	
			2)자산배분 : 시장위험과 관련된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	체계적 위험발생시 적극적
		2) 성장 프리미엄이 가능한 종목	
		중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에 우선 투자	3)섹터배분 : 경기상황과 업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섹터비중조절
			을 통해 초과수익 기회 포착
			<u>을 용해 보러부득 기되 보급</u> 4)종목선택 : 업종대표주와
		영향을 고려하여 탄력적	전략종목군(시장주도주, 저평가주)
		포트폴리오 조절	으로 초과수익 추구
		■ <u>포트폴리오 선정기준</u>	<u> 세부 운용전략</u>
			1)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 핵심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 가전, 핸셋, 자동차, 의류, 화장품 등	<u>목군 70%이상과 전략종목군</u> 30%이하를 통해 안정적 초과성과
		<u>앤깟, 시당시, 의규, 외경품 등</u> 2) 중국내 소비 지역 확산에 맞춰	30 전에이를 중에 한영역 오퍼정퍼 창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	<u>으로</u> ◆ Core(핵심) 종목 군
		<u>유통, 홈쇼핑, 생활용품 등</u>	-업종 대표 핵심 우량주로 중장기

	T		
		항공, 면세점, 백화점, 카지노 등 자산 및 업종 배분 전략: 1) 중국의 경기 상황을 감안한 중국 관련 종목비중의 탄력적 비중조절을 통해 국면별 대응 2) 시장위험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 발생시 적극적 자산배분 전략 병행(선물 헷지 전략 병행) ○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이라 함은	- 유망 우량주로서 시장 주도주 및 테마주에 중・단기 매매이익 확보를 위해 투자 - 투자비중은 30% 이하 -펀드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구성 2)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장기 성장주를 발굴하여 장기투자로 의미있는 초과성과 추구 *장기성장주 : 매출액, 이익성장 률이 시장 및 업종보다 높은 기업 3) 시장의 비효율적 변동성을 활용한 Bottom Fishing 을 통해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 결산으 로 인한 기타비 용 등 업데이트	주식을 말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직전 회계연도 : 2012.09.27 ~ 2013.09.26]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십합투자 1. 재무정보		·실적 등에 관한 사항 가. 요약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가. 요약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 <mark>작성기준일:직전회계년도</mark>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작성기준일:직전회계년도
3.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			- 작성기준일 (2013.11.03)
제4부 집합투자기	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 자에 관한 사항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 규모	라. 운용자산 규모 - 작성기준일 (2013.11.03)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채권평가회사 명칭 변경 및 추가 * 보호를 위해 필요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 개요 - 나이스채권평가 www.npricing.co.kr - 〈추가〉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 개요 - 나이스피앤아이 www.nicepni.com -에프앤자산평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02-721-5300 www.fnpricing.com
1. 투자자의			2) 이겨긔 해내바버
1. 구시시의	사본시상과 금융	2) 의결권 행사방법	2) 의결권 행사방법

권리에 관한 사항	투자업에 관한	■ <u>수익자총회는 발행 된 수익증권</u>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 <u>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u>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가. 투자자 총회 등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법률 등 법령 개 정사항 반영	수익자의출석으로성립되고,출석한수익자의의결권의3분의2이상과발행된수익증권총수의3분의1이상의찬성으로결의합니다.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 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 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수익자 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소유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이항에서 "간주 의결권행사"라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의결권이 행사되지아니하였을 것으로 감시다.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가구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가구약하고 아니하였을 것으로 가구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가구약하고 아니하였을 것으로 가구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가구약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장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하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으로 함하는 방법
		3) 연기수익자총회	및 절차를 따를 것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 회의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 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 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 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 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연기수익자총회" 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 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 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1	i	1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 정사항 반영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최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 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반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반한 보수가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4)반대매수청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할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할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고 밖에 수익자를 보호 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접 제18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 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구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 정사항 반영	합세188소세/항식 보외의 무준후단에 따른 신탁계약 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 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 계약의변경 또는 법 제193 조제2항에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수익자 총회의 결의에반대(수익자총회 전 에 해당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결의에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경우로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청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 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 정사항 반영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 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 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 정사항 반영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임면, 정관변경등 경영권변경과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행사 내용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사유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사유

□ 변경대비표(집합투자규약)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펀드명	펀드명 변경	현대 <u>중국으로뻗어나가는대한민국</u>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현대 <u>튼튼대한민국</u>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제3조(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펀드명 변경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현대 중국으로뻗어나가는대한민국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라 한다. ②, ③ 〈생략〉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현대 <u>튼튼대한민국</u> 증권투자신탁1 호[주식]"라 한다. ②, ③ 〈현행과 동일〉
제17조(투자대상 자산 등)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 정사항 반영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0.〈생략〉 11. 법시행령 제268조 <u>제3항</u> 의 규정 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0.⟨생략⟩ 11. 법시행령 제268조 <u>제4항</u> 의 규정 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 정사항 반영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나.〈생략〉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 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나.〈생략〉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1	Т	Г
제22조(신탁업자 의 업무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 정사항 반영	의 총액을 합한 금액 으로 나는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①,②〈생략〉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①, ② 〈현행과 동일〉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수익자총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 정사항 반영	①~⑤〈생략〉 ①~⑤〈생략〉 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 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외에 신탁 계약으로 정한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5분의 1</u>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1		
		(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 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 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한다)를 소집 하여야 한다.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u>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u>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
		⑨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 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 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 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제47조(투자신탁 의 합병)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 정사항 반영	① 〈생략〉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합병하는 각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거쳐야한다.	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제38조(반대수익 자의 매수청구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 정사항 반영	①법제188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른신탁계약의변경또는법제193조제2항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에대한수익자총회의결의에반대하는수익자는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 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에 따른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청구하는 경우 역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 정사항 반영	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후 지체 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 5. 〈생략〉 ③, ④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경우⑥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①〈현행과 동일〉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후 지체 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 재산의 규모와수익률을 말한다) 2.~5.〈현행과 동일〉 ③,④〈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전화・전신・모사전송,전자우편및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방법으로 표시한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경우⑥〈생략〉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⑪〈생략〉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	---

□ 기 타 : 정정 후 원본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